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8. 9. 4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98. 9. 5

다. 상 정 일 자 : 98. 9. 14

(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~2차 회의)

2. 제안 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 : 내무과장 최 영 옥

나. 개정사유

o 지방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원 관리기관별 적정 정원을 새로이 정함.

o 정원 관리 기관을 집행 기관과 의회사무과로 구분하여 정원 조정의 탄력성 확보

다. 주요내용

o 정원 관리기관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 함.

o 정원 관리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함.

- 집행기관의 정원 : 657명

- 의회사무과의 정원 : 16명

o 정원초과 현원은 2000. 12. 31까지 이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ㅇ 기구 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지침에 따라 99명(12. 99%)의 인원을 감축하였으나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만 구분되여 있으므로, '정원조례시행규칙' 제정시 부서간의 업무 형편에 맞는 정원을 책정토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
ㅇ 특히 2000년 말까지 잉여인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임을 전제하면서 본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은 상위 법규에 위배되거나 개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'생 략'

5. 토론요지

'생 략'

6. 심사결과

'원안가결'

첨 부 :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집행기관과 의회 사무과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647명
2. 의회사무과의 정원 : 16명

제3조중 '의회사무기구, 소속기관'을 '의회사무과, 직속기관'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. 12. 31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2조(정원의 총수) 화순군의 본청, 의회사무기구,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. 1. 군 본 청 : 245명 2. 의회사무기구 : 18명 3. 직 속 기 관 : 158명 4. 사 업 소 : 25명 5. 읍 · 면(그 출장소를 포함한다) : 315명	제2조(정원의 총수)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647명 2. 의회사무과의 정원 : 16명
제3조(직급별 정원의 규정) 군의 본청, 의회사무기구, 소속기관 및 읍 · 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3조(직급별 정원의 규정) - - - - - 의회사무과, 직속기관 - .